

# (재)서울문화재단 - (재)성북문화재단

## 「2015 예술마을 만들기」 사업 협약서

(재)서울문화재단(이하 “서울”이라 한다)와 (재)성북문화재단(이하 “성북”이라 한다)은 「2015 예술마을 만들기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15 예술마을 만들기」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의 의무·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,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릉지역의 예술마을 실현
2.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예술학교 프로그램 개발
3.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 발굴 육성 및 연대
4. 공공 공간의 문화재생과 활성화
5. 지역의 현안과 이슈 기반의 공동체예술 기획
6.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조성
7. 그 밖에 양 기관의 관심사와 요청에 따른 제반 분야

제3조 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과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1.(사업개요) 추진하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- 1) 사업명 : 「2015 예술마을 만들기」
- 2) 사업기간 : 2015. 07월 ~ 2015. 11월
- 3) 사업장소 : 성북구 정릉 일대
- 4) 사업내용

가. 정릉 예술 마을 학교 운영

나. 정릉 예술 마을 축제 운영

5) 사업예산 : 일억원(₩100,000,000)

(단, 사업기간 내 활동할 프로젝트 매니저 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(₩15,000,000 이내)는 사업예산 내에서 “서울”이 직접 집행)

2.(사업내용) “성북”은 “서울”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운영한다.

- 1) “성북” 내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담당자 1인 지정
- 2) 정릉 예술마을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) 정릉 예술마을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)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워킹 그룹 조직 및 운영

- 5)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
- 6) 사업 운영 실적보고 및 평가, 관리에 관한 사항
- 7) 기타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관 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3.(사업계획) ① 제3조 2항 내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을 하여야 한다.  
 ② 양 기관은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근거문서를 남겨두어야 한다.

4.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서울”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세부계획 확정 후 14일 이내에 “성북”에게 지급해야 한다.  
 ② “성북”은 상호협의를 내용에 근거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“서울”에 제출하고 “서울”은 이에 대한 금액을 교부한다.

5.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① “성북”은 사업비 집행 시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의 회계 규정,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 
 ② “성북”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활용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활용한다.  
 ③ “성북”은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.

6.(사업의 결과보고, 정산 등) “성북”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“서울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“서울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7.(협회의무) ①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.  
 ② “서울”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“성북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 
 ③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“성북”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성북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 
 ④ “서울”은 사업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4항의 제출자료 등 “성북”의 사업 관련 절차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“성북”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  
 ⑤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은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에 관한 변경과 그 필요가 있을 시 협의 하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 기관은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1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“시” 혹은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

2)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,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약정이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·해제되었을 경우 “성북”은 약정이 해지·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“서울”에게 제출하고,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, “성북”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이를 “서울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상관례에 따른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(정산 종료 시)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“서울” 및 “성북”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거나, 민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·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본 협약서에 의해 체결된 업무교류 및 협력의 이행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서울”과 “성북”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07. .

“서울” : (재)서울문화재단 (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)

대표이사 조 선 희 (인)

“성북” : (재)성북문화재단 (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)

대표이사 김 종 휘 (인)